

■ 장애인 · 노인 ·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2의3] <신설 2021. 11. 30.>

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외의 자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
시설(제5조의2제2항 관련)

시설주	대상 시설
1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 립학교	
2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5조, 제49조 및 제 76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,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	
3. 「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 률」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	별표 2의2에서 정하는 시설
4. 「지방자치단체 출자 · 출연 기관의 운영 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지정 · 고시 된 출자 · 출연 기관	
5.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방자치단 체출연 연구원	
6.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 외의 자	「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의 초 고층 건축물 및 같은 조 제2호의 지하연 계 복합건축물